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19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,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7,949백만원 증가함에 따라

나.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을 38,128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

-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당초 (A)	1차 변경 ※ 변경없음	2차 변경 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계	117,747	117,747	125,875	8,128 (6.9%)
세외수입	1,447	1,447	1,607	160 (11%)
경상적세외수입	1,447	1,447	1,607	160
이자수입	1,447	1,447	1,607	160
공공예금이자수입	1,447	1,447	1,607	160
임시적세외수입	-	-	19	19
기타수입	-	-	19	19
그외수입	-	-	19	19

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	44,683	44,683	44,683	-
부담금	44,683	44,683	44,683	-
부담금	44,683	44,683	44,683	-
<b>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</b>	<b>71,617</b>	<b>71,617</b>	<b>79,566</b>	<b>7,949</b> <b>(11%)</b>
보전수입등	71,617	71,617	79,566	7,949
예치금회수	71,617	71,617	79,566	7,949
예치금회수	71,617	71,617	79,566	7,949

-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당초 (A)	1차변경	2차변경 (B)	증 감(B-A) (증감률)
<b>계</b>		<b>117,747</b>	<b>117,747</b>	<b>125,875</b>	<b>8,128</b> <b>(6.9%)</b>
<b>비용자성사업비(정책사업비) 소계</b>		<b>87,558</b>	<b>87,737</b>	<b>87,737</b>	<b>179</b> <b>(0.2%)</b>
	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	87,558	87,737	87,737	179 (0.2%)
	1 다동공원 조성사업				
	<b>소 계</b>	87,126	87,126	87,126	-
	시설비	87,108	87,108	87,108	-
	감리비	15	15	15	-
	시설부대비	3	3	3	-
	2 세운 5-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				
	<b>소 계</b>	432	611	611	179 (0.2%)
	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	432	611	611	179 (0.2%)
<b>행정운영경비</b>		<b>10</b>	<b>10</b>	<b>10</b>	<b>-</b>
	기금 관리비				
	사무관리비	10	10	10	-
<b>재무활동</b>		<b>30,179</b>	<b>30,000</b>	<b>38,128</b>	<b>7,949</b> <b>(26.3%)</b>
	여유자금 예치				
	일반예치금	30,179	30,000	38,128	7,949 (26.3%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팀 김유림 (☎2133-8614)